

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

제정일 : 1997. 09. 01

개정일 : 2026. 06. 10

제1조 (목적) 본 대학원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생활동이 건실한 학생의 학업의욕과 연구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, 본 내규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, 선발방법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학위원회 구성 및 의결)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, 대학원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.

1. 장학금지급 규모 결정 및 대상자 선정
2. 장학금지급대상자별 지급기준
3. 기타 장학운영에 관한 사항

제3조 (장학금 종류 및 선발방법) 장학금의 종류 및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① 성적장학금 :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, 학과별 등록인원 비율에 따라 장학선발 인원을 배분하고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과 학과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.

② 입학성적우수장학금 : 학과 추천을 받은 입학생 중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, 입학하는 당해 학기에 1회 지급한다.

③ HUFSSAN장학금 : 본교 학부 또는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원 학위과정(석사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 또는 박사과정)에 진학한 학생 중 학과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단,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학과 운영방침에 따라 학과 조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④ 외국인장학금

1. 외국인유학생장학금 : 외국인 입학생중 학과 추천을 받은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,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·지급한다.

2. HGLS장학금(HUFS Global Leader Scholarship) : 외국인학생 중 우수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,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·지급한다.

3. 재외동포재단장학금 : 재외동포재단 추천을 받은 외국인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

4. 6·25UN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: 6·25(한국전쟁)UN참전용사 후손의 자격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

5. 한국어능력증진장학금 : 한국어능력 부진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문화교육원 수업료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,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·지급한다. 단, 교내 장학금 재원 범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대학원 총학생회 임원장학금 : 대학원 총학생회 임원활동을 하는 자에게 매 학기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매년 총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를 선발한다.

⑥ 조교장학금

1. 학과조교장학금 : HUFSPAN장학생이 없는 학과의 학과 조교근무를 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, 학과별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.

2. 학사조교장학금 : 교내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교에게 지급하며,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(부서)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3. 원내조교장학금 :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대학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에게 지급하며,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.

⑦ 교직원직계가족 장학금 : 교직원의 직계가족이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정규 학기 동안 등록금의 반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(항 자구삽입 : 2021.0.0.)

⑧ 특별기여장학금 : 총장 또는 장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대학 또는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⑨ 협력기관 MOU장학금 : 교내· 외 협력기관 근무자가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경우, 관련 MOU에 근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⑩ 외대사랑장학금(사이버한국외대졸업자 장학금):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한 학생 중에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⑪ 복지장학금 : 매학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⑫ 교원역량강화장학금 : 교원역량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임교원이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시 해당 교원에게 정규학기(4개 학기) 등록금 전액을(입학금 포함)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 단, 교내 장학금 재원 범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
⑬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 : 대학원 계열별(어학계열, 인문·사회계열, 이공계열) 학과 학생 중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며,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. 단, 교내 장학금 재원 범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
⑭ 외부장학금 : 외부장학금은 외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, 지급한다.

제4조 (장학금 지급 기준) ① 제3조 3항의 장학금은 2학기 지급 시부터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4.0 이상으로 과락 된 과목이 없는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3조 4항 1. 2호의 장학금은 2학기 지급 시부터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3.5이상으로 과락된 과목이 없는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일반휴학중인 자, 학칙 위반으로 징계중인 자, 재입학자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

다.

④ 장학금 선발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정규학기 학점취득자 우선, 학기 우선, 전체 평점 우선, 직전학기 이수학점 우선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 (내규의 제.개정) 본 내규의 제.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제6조(기타) 본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거나, 본 대학교 「장학금 지급규정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1. 본 내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내규는 2016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본 내규는 2018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본 내규는 2021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하되, 제3조 4항 5호(한국어능력증진장학금), 제3조 13항(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)은 2020년 2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.
5. 본 내규는 2021년 05월 0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본 내규는 2026년 06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2항(입학성적우수장학금)에 관한 변경사항은 2027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, 제3조 3항(HUFSAN장학금)에 관한 변경사항은 2026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.